

희망저축계좌 |

□ 지원내용(3년만기)

○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♣ 지원예시

▷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⇒ **3년간 약 1,44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***
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탈수급장려금) 생계·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'23년 가입자 72만원)
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□ 가입 및 유지기준
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(단위 : 원/월)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	6인 가구	7인 가구
기준 중위소득*	2,077,892	3,456,155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가입 및 유지 기준 (소득하한)	498,694	829,477	1,064,356	1,296,231	1,519,365	1,734,715	1,945,804
유지기준(소득상한)	4,434,816	4,434,816	4,434,816	5,400,964	6,330,688	7,227,981	8,107,515

*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,534원씩 증가

□ 해지요건

구 분	해지사유	지급액
지급해지	만기	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
	중도	

- 3년간 통장유지 +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
- 만기 이전 탈수급 시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
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(기준 중위소득 100%) 초과 시
-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
- 탈수급 후 본인 사망
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(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

구 분		해지사유	지급액
일부 지급해지		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	• 만기성공금 지급 (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+이자)
환수해지	만기	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	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 대상별 추자원금 미납)
	중도	-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-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- 압류, 가압류 - 본인 요청 시	

□ 유의사항

-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 -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~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,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.
-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 기간 중 총 6개월간 ‘적립중지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용인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

- 용인지역자활센터(☎ 031-8005-8040)
- 용인시청 복지정책과 (☎ 031-324-304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)